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¹⁾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²⁾

- 「경비업법」 중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안 제1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 옥외광고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안 제2조).

II. 검토의견

1. ‘경비원’에 대한 파산선고 결격조항 정비 필요성 검토

-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나누어지고,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며, 특수경비원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1) 참고로,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결과 제명이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수정된 바 있음.

2)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 내용으로 정리함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함.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 일반경비원의 업무 중에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의 호송경비업무(법 제2조제1호나목)가 포함되어 있고, 특수경비원의 경우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 무기의 휴대 및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에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경비업법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③시·도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⑧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1.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投棄) 또는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

- 경찰청은 당초 「경비업법」상 경비업은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인 점,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재산적 기초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 경비 대상 시설 및 재산 등에 대한 경비업무를 도급(위임·위탁)한 소유자 등과 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경비업 종사자, 즉 법인의 임원·경비지도사·경비원과의 신뢰 관계가 중요한 업무인 점, 경비업 종사자가 파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경비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비업 종사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³⁾이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경비업 법인의 임원은 경비업자의

3) 행정안전위원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547호)」 검토보고서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로 거래상 신뢰나 재산상 신용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경우 단순히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원과 동일하게 경비지도사, 경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채무자의 회생 기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⁴⁾하였음.

2. 기타 사항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현행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규정된 현행법 제10조의 2 단서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김 성 완)

4) 행정안전위원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547호)」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자료